

사업 연도	· · · ~ · · · · ·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구 분	① 요건	② 검토 내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									
중 기 업	⑩ 사업 요 건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 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※ ①・③은 2025. 2. 28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><tr><th>구분 업태별</th><th>기준경비율 코드</th><th>사업 수입금액</th></tr><tr><td>(01) ()업</td><td>(04)</td><td>(07)</td></tr><tr><td>(02) ()업</td><td>(05)</td><td>(08)</td></tr><tr><td>(03) 그 밖의 사업</td><td>(06)</td><td>(09)</td></tr><tr><td>계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 코드	사업 수입금액	(01) ()업	(04)	(07)	(02) ()업	(05)	(08)	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계			(17) 적합 (Y) 부적합 (N)	(26)
	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 코드	사업 수입금액																
	(01) ()업	(04)	(07)																
	(02) (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
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
⑪ 규 모 요 건 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(“평균매출액등” 은 “매출액” 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0) (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(11) (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억원)	(18) 적합 (Y) 부적합 (N)	적 합 (Y) 부 적 합 (N)																
⑫ 독 립 성 요 건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・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,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 센트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 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적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
⑬ 유 예 기 간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 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 도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 우에는 7개 사업연도)]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 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 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 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 사유발생 연도(13) (년)	(20) 적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 성요건(⑫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적합(Y), 부적합(N)	(27) 적 합 (Y)															
	⑮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“평균매출액등” 은 “매출 액” 으로 봄)이다) 이내일 것	○ 매출액 - 당 회사(14) (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억원) 이하	(22) 적합(Y), 부적합(N)	부 적 합 (N)															

구 분	① 요건	② 검토 내용	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적합(Y), 부적합(N)	(28) 적합 (Y) 부적합 (N)
	⑪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)				(24) 적합(Y), 부적합(N)	
	⑫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적합(Y), 부적합(N)	
	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)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
	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]: 5천억원 미만	(억원)	(억원)	(억원)	(억원)		
	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					

작성 방법

- 제1쪽 ① 요건의 ㉓ 사업요건란 ②에서 '소비성 서비스업'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, ㉓ 사업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 내용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(兼營)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.
-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),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)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「관광진흥법」 제5조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합니다),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, 마사지업
- 제1쪽 ㉔ 독립성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'관계기업'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.
- 제1쪽 ㉕ 유예기간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'사유발생 연도(13)'에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제1쪽 및 제2쪽의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"적합(Y)" 또는 "부적합(N)"에 체크합니다. 이 경우 제2쪽의 (25)란은 ㉕란에 따른 ① ~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"적합(Y)"에 체크하며, ㉕란에 따른 ① ~ ③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.
-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(26)란은 ㉕ 사업요건란·㉖ 규모요건란·㉗ 독립성요건란에 따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㉕ 유예기간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합(Y)"에 체크합니다.
-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(27)란은 ㉘란 및 ㉙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합(Y)"에 체크합니다.
- 제2쪽 ④ 적정 여부의 (28)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[제1쪽 (26)란에서 "부적합(N)"으로 체크된 기업]으로서 ㉚란, ㉛란 및 ㉜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합(Y)"에 체크합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("평균매출액등" 은 "매출액" 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평균매출액등 1,800억원 이하	25. 수도업	E36	평균매출액등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6. 운수 및 창고업	H	1,000억원 이
3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7. 정보통신업	J	하
4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28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
5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9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800억원 이하
6. 가구 제조업	C32		30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7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,200억원 이하	31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8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3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9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3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26 제외)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	34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평균매출액등
11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35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12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13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	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600억원 이하
14. 건설업	F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15. 도매 및 소매업	G		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 (S94 제외)	
16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
17. 광업	B	1,000억원 이하	41. 금융 및 보험업	K	400억원 이하
18. 담배 제조업	C12		42. 부동산업	L	
19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43. 임대업(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)	N76	
20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	44. 교육 서비스업	P	
2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		
22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		
23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			
24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		

작성 방법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	18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	19. 금융 및 보험업	K	100억원 이하
3. 식료품 제조업	C10		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
4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21. 광업	B	80억원 이하
5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22. 담배 제조업	C12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8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27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31. 건설업	F	
15. 가구 제조업	C32		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
			35. 부동산업	L	
			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
			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30억원 이하
	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			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
	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15억원 이하
			41. 교육 서비스업	P	
			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			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 (S94 제외)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